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08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 7. 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 6. 20.



보곰당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핫시즈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 7~8층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070-7710-8592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 02-2231-8592

[담당부서] 기획관리팀 070-8835-155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0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3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5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7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8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대표자	영업표지	
(주)햇시즈너	금교일	보کم당 외 1개	
주소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7~8층		070-7710-8592	02-2231-8592
법인 설립등기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09.11.13.	110111-4219906	2009.11.13.	201-86-1331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금교일	불닭발땡초 동대문 엽기떡볶이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7~8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금교일	070-7710-8592	02-2231-8592
사내이사	금주영	불닭발땡초 동대문 엽기떡볶이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7~8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금교일	070-7710-8592	02-2231-859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보کم당]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보کم당	볶음요리가 맛있는 집
상 호	보کم당 OO점	
상표(서비스표)		23.11.21 서비스표 등록 (등록번호: 4021159470000)
상표(서비스표)		24.01.02 서비스표 등록 (등록번호: 402133685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91,815,046	71,050,402	20,764,644	82,215,570	-1,781,380	-3,518,726
2023년	97,457,433	76,338,852	21,118,580	108,374,471	2,714,211	353,936
2024년	110,846,255	87,519,299	23,326,956	123,006,628	5,109,336	2,208,375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금교일	대표이사	2013. 09. ~ 현재	(주)핫시즈너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금주영	사내이사	2009. 11. ~ 현재	(주)핫시즈너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	10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핫시즈너	가맹사업 경영	2009.11.~현재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등록번호: 20130100283)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 내용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보کم당	상표	2022.04.26. 출원 2023.10.04. 등록	출원: 4020220078248 등록: 4020987980000	(주)햇시즈너
보کم당 볶음요리(가로)	상표	2022.05.20. 출원 2023.11.21. 등록	출원: 4020220094021 등록: 4021159470000	
보کم당 볶음요리(세로)	상표	2022.05.20. 출원 2024.01.02. 등록	출원: 4020220094034 등록: 402133685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보کم당] 가맹사업 현황

1. [보کم당]을 시작한 날: 2024. 1. 25.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2. 6. 30.)

2. [보کم당]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햇시즈너	보کم당	금교일	2022.06. ~ 2025.03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18길 7, 6~8층
(주)햇시즈너	보کم당	금교일	2025.03 ~ 현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1가길 10, 7~8층

3. [보کم당] 업종

영업표지	업종	
보کم당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닭볶음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보کم당]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	3	4	-	4	15	11	4
서울	3	-	3	4	-	4	5	1	4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	-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4	4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2	2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보کم당]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0	11	0	0	0	11

6. [보کم당]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보کم당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2.12.31.	23.12.31.	24.12.31.
가맹본부	(주)햇시즈너	불닭발땡초 동대문 엽기떡볶이	20130100283	분식	541/11	592/10	650/9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보کم당]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중 영업 일수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점은 제외하였고, 5개 미만 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1	412,254	15,441	558,581	21,815	194,729	6,509	
서울	1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4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에 설치된 POS 상의 매출액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당사의 POS를 사용하지 않아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위 매출액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POS 상의 매출액 수치 역시 가맹점이 POS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거나 POS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매출액이 아닐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보کم당]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보کم당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1	26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보کم당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보کم당]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42,764	(비공개)	-	
광고	소계	24.01~24.12	224,925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소계	24.01~24.12	217,838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청계7가지점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02-2231-811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예치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기업은행 방문

2) 온라인 예치

인터넷뱅킹 로그인(mybank.ibk.co.kr) → 뱅킹관리 → 제휴서비스 → 가맹금인터넷 예치서비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궏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궏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궏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궏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궏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보کم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POS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5,5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식자재 발주 후 반환요청 시 비용차감 후 정산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7,129			72.6㎡ 기준
주방 설비	협력업체	16,488	설치 후 7일 이내	제작 전 /기성품 입고일 최소 7일전	냉장고,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등
	협력업체	6,847	발주 후 2일 이내	설치일 최소 15일 전	인덕션
주방 집기	협력업체	7,999	발주 후 7일 이내	설치일 최소 10일 전	압력솥, 냄비, 팬, 밥드 등등
	기타사입	226	발주 시	주문업체 개별문의	호출벨, 껌시트 등등
인테리어	협력업체	48,400	공사 마감 이전	공사시작일 최소 14일 전	면적 3.3㎡당 2,200,000원 *경비 별도
가구	협력업체	2,056	입고일 3일 이내	제작 전 /기성품 입고일 최소 7일전	4인 테이블 8개 기준
사인물	협력업체	9,240	공사 시작일 3일 이내	제작 전	간판, 스키시, 어닝, 시트지 등등
POS	(주)핫시즈너	1,500	설치 7일 전	제작 전	
초도 상품	(주)핫시즈너	3,477	발주 시	취소불가	상품 변질로 인한 반환불가
	기타사입	449			
개점 홍보물	협력업체	447	물품 공급 1일 이전	제작 전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철거, 전기증설, 가스시설, 냉·난방비, 소방시설, 닥트공사, 외부공사, 화장실, 쇼케이스, 방풍시스템(전면프레임, 강화유리, 에어커튼 등), 테라스공사 등은 별도로 진

행됩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기획관리팀 (070-8835-1559)	① 가맹희망자가 희망 입지 조사(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② 가맹본부에 희망 입지 및 조사 내용 전달 ③ 가맹본부 담당자 배정 ④ 가맹본부 내부기준에 따른 검토 실시 후 승인 여부 통보 ⑤ 가맹희망자 동의 시 진행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개설 교육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 신용불량자 ○ 심신미약자 및 노약자 ○ 지명수배자 ○ 신용 및 사기 전과자 ○ 전염병 보균자 ○ 가맹계약의 체결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임이 의심되는 자 ○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법률에서 정한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자 ○ 기타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자
종업원	채용 시	※ 아래의 조건을 준수할 것 ○ 보건증 보유 필수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만 18세 이상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자가 아닐 것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보کم당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주)핫시즈너	440	매월 25일			
POS사용료	(주)핫시즈너	33	매월 25일		유지보수 비용	
테이블오더 임대료	협력업체	16.5 /1대당	가맹점 별도 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
해충방제	방제업체	업체에 따라 상이	가맹점 별도 계약			
배상책임보험	보험업체	업체에 따라 상이	가맹점 별도 계약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 보수비용	협력업체	발생금액 중 본사 비율 제외한 나머지	마감 이전		공사 실비	교체 ·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 안하여 당사와 협 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주)핫시즈너	연 6% (법정이자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모든 채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위해서 귀하는 당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 연장 시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가입비,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교육비 등)의 지급조건이나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당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매장의 인테리어 및 설비의 사용기한을 각 매장의 최초 개점일(가맹계약서 표지의 기재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하나, 인테리어 및 설비가 지극히 불량하여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리뉴얼, 보수,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협의 하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및 설비의 종류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여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기타 설비의 보수에 따른 비용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인테리어 리뉴얼 시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합니다. 또한, 시방서 및 매뉴얼에 의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보کم당]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햇시즈너]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 및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실행경비 등의 대가로 550만원(VAT포함)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 ② [보کم당]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 ③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 ④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 ⑤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보کم당]의 가맹점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보کم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필수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보کم당]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매출액)	비고
(주)디디엠유통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주)제이케이푸드 시스템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 산출근거

(주)디디엠유통 : 보کم당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 매출액

(주)제이케이푸드시스템 : 보کم당 가맹점의 연간 상품 발주수량 x 공급단가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당사는 [보کم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가 [보کم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보کم당 세트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뚝닭 세트		○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묵은지뚝닭 세트			
뚝배기 닭볶음탕			
묵은지 뚝배기닭볶음탕			
보کم당 닭볶음탕			
묵은지 닭볶음탕			
묵은지 곱빼기			
대창마늘 닭볶음탕			
대창마늘 곱빼기			
간장찜닭			
파리간장찜닭			
로제찜닭			
닭한마리			
새우파티			
눈꽃치즈감자전			
뚝집튀김			
무뼈 닭발튀김			
계란찜			
공깃밥			
김가루대접밥			
날치알볶음밥			
참치마요밥			
치즈			
파리튀김			
감자			
고구마			
떡			
두부			
우동사리			
납작당면			

감자사리면			
칼국수			
무피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만 19세미만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 1회 위반: 서면 경고 ○ 2회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보کم당 세트	37,000		

뚝닭 세트	11,000		
묵은지뚝닭 세트	14,000		
뚝배기 닭볶음탕	12,000		
묵은지 뚝배기닭볶음탕	15,000		
보کم당 닭볶음탕	27,000		
묵은지 닭볶음탕	30,000		
묵은지 곱빼기	35,000		
대창마늘 닭볶음탕	34,000		
대창마늘 곱빼기	41,000		
간장찜닭	28,000		
짜리간장찜닭	32,000		
로제찜닭	29,000		
닭한마리	25,000		
새우파튀	12,000		
눈꽃치즈감자전	10,000		
뚝집튀김	12,000		
무뼈닭발튀김	14,000		
계란찜	4,000		
공깃밥	1,000		
김가루대접밥	2,000		
날치알볶음밥	4,000		
참치마요밥	4,000		
치즈	2,000		
짜리튀김	5,000		
감자	1,000		
고구마	1,000		
떡	1,000		
두부	1,000		
우동사리	2,000		

납작당면	2,000		
감자사리면	2,000		
칼국수	2,000		
무피클	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홀·포장·배달 영업을 하는 닭볶음탕 전문점	보کم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	점포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500m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

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재조정 사유 발생 ② 당사 담당팀 검토 ③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⑤ 가맹점사업자 동의 ⑥ 영업지역 변경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 내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보کم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보کم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닭볶음탕	세부업종이 다름 조리방식이 다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53.6%	46.4%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보کم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구분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비고
신규계약	2년	
갱신계약	1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보کم당]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에서 정한 내용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8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정기 납입경비, 채무불이행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개점 준비완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당사의 영업표지를 당사의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당사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의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의무를 해태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맹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운영주 혹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상이하거나, 가맹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자와 공동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사업자등록상 사업자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	
○ 본사와 합의 없이 매장운영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적 과장이 생겨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교육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또는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당사와 협의된 영업형태와 다르게 점포를 운영한 경우(삽인삽 포함)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39조 1항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9조 1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① 계약 수정 사유 발생 ② 당사 담당팀 검토 ③ 수정계약서(안) 작성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⑤ 가맹점사업자 동의 ⑥ 수정 완료	①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것	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② 당사 담당팀 검토 ③ 승인 여부 통지 ④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 ⑤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기획관리팀 (070-8835-155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도양수비 5,500,000원(VAT포함)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경우 가입비는 최초가입비 11,000,000원(VAT포함)로 적용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수·양도 절차에 준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양수·양도 절차에 준함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보کم당]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닭볶음탕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②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③ 허가 여부 통지 ④ 완료	문의: 기획관리팀 (070-8835-155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보کم당]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3:00	주 6일 이상, 월 26일 이상	문의: 기획관리팀 (070-8835-15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가맹본부 또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점포가 당사의 관리기준에 미달될 경우 당사는 절차에 따라 경고 조치를 취하며, 그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 및 그 밖의 대리인은 점점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가맹점포(영업장)에 대한 비정기적 영업장 관리 · 감독을 진행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보کم당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50%	50%	① 광고 계획 공고 ②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③ 가맹점부담액 제시	광고행사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100%	0%	해당없음	
	가맹점 개별광고	0%	100%	해당없음	
판촉행사	전국판촉	사전 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		① 행사계획 공고 ② 가맹점부담액 제시 ③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④ 행사 시행 ⑤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가맹점 개별판촉	0%	100%	해당없음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시행하고자 하는 광고 · 판촉 계획을 당사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당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귀책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지역규정 위반(제11조): 1,500,000원
2.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제14조 제2,3항): 10,000,000원
3. 교육 및 훈련 미제공(제17조): 3,000,000원
4. 이유 없는 재료 공급 중단(제25조): 3,000,000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위약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지역규정 위반(제11조): 1,500,000원
2. 영업양도규정 위반(제29조): 10,000,000원
3. 위생사태 시정조치 거부(제12조 제4항): 1,500,000원
4. 경업금지의무 위반(제35조 제4항): 20,000,000원
5.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 50,000,000원
6. 허락없는 외부로부터의 재료구입(제22조, 제23조): 해당 매입금의 20배
7. 허락없는 추가점포개설(제7조 제1항): 15,000,000원
8. 브랜드 통일성 훼손(제13조 제1항): 5,000,000원
9. 영업일수 제한규정 위반(제26조): 일수 X 1,000,000원
10. 허락없는 광고, 판촉(제31조 제5항): 10,000,000원
11. 정기교육 미이수(제17조): 5,000,000원
12. 브랜드 이미지 훼손(제35조 14항) : 50,000,000원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70일 내외	[14p~16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온라인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가맹희망자 선정	○ 운영신청서 수령 및 검토 ○ 가맹희망자 면담	D-63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예정자 상담	D-60 ~ 5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5 ~ 51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 점포 실측/설계/공사비등 비용 산출	D-47 ~ 45(3일)	
도면 협의 등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4(1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39(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4 ~ 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 ~ 4(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시공업체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 합의의 경우 1년의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보کم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및 브랜드 소개/메뉴조리법 /POS 사용법/고객 응대법/위생 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동	상동	상동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및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요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보کم당]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 훈련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0일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1,1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할 경우 당사자 외 1인까지는 동일한 신규교육비를 받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갱신계약 체결 후 1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성수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102호
2	서울	수유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38, 1층
3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92, 105호, 106호
4	서울	서울대입구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길 35 (봉천동), 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730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785,63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 가맹점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